



[2012.10.9] [24135 , 2012.10.9,]

() 044 - 201 - 6901

1 () 「 」
[2011.1.26]

1 2() 「 」(" ") 7 2 "

1. 6 1 (" ")
2.

가. 「 」 2 2
. 8 2 3

7 1 (" ") 1

50 가 7 2

1 .<

2012.10.9>

[2011.1.26]

2 () 8 5 8 2 3 "

.< 2011.10.28>

1. 가

2. 「 」 7

3. 24 가 가 가

4. , 가

[2011.1.26]

3 () . . (50
) . (" . ") 50 ("

") 10

1 .< 2012.10.9>

. 10 가

1

6 . 1

[2011.1.26]

4 ()
17

, , , .

1.

2.

3. (斷電)・(斷水)

4. 가

1

가

10

[2011.1.26]

5 () 12 1 6 " "

1.

2. (用水) [(半製品)] (副原料 가

[2011.1.26]

6 () , ()・

()

14 1

6

14 1

가

1

3

1

[2011.1.26]

7 () , 6 1

[2011.1.26]

8 () 20 " "

1. 4

2. (湖沼)・

[2011.1.26]

8 2() 21 1 (" ")

(

, 「

」

7

1. 「 」 2 1 8 ・ 8 2

2.

3. 가

2

7
「

」 10

가

가

1 4

[[2012.10.9](#)]

9 () 24 1

1. 18 1 3 4

2. 19

3. 22 3

24 2

1. 8 8 2

2. 10

3. 11

4. 12

5. 13

6. 17

7. 22 1 2

8. 30 1 1 2 2

9. 4

24 3

21 8 2

[[2011.1.26](#)]

[[2012.10.9](#)]

10 () 30 1 2

2 1

[[2011.1.26](#)]

< 24135 ,2012.10.9 >

[별표] <신설 2011.1.26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1호	50	70	100
나.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	법 제30조 제1항제1호	120	160	200
다. 법 제8조제5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 제1항제2호	100	150	200
라.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 제1항제3호	100	150	200
마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	법 제30조 제2항제2호	50	70	100